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675호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일부 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유가 상승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수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지원하기 위해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관련 관계부처 회의(2022. 5. 17.) 결과에 따라 유류비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유가연동보조금 정의(안 제4조)

: 물가관계장관회의 <2022. 4. 5.>의 「최근 물가동향과 향후 대응방안」 및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관련 관계부처 회의 <2022. 5. 17.> 결과에 따라 경유 가격의 일부를 보조해 주는 보조금

나.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대상(안제 6조)

: (대상)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사업용 화물자동차

(기간) 2022년 5월 1일 ~ 2022년 9월 30일 (5개월, 연장)

다. 유가연동보조금 지급단가(안 제8조)

: {지역별 평균 판매가격(원/ℓ) - 기준가격(1,750원/ℓ)}의 50%.

다만, 183.21원/ℓ (= '01.6. 에너지세제 개편 전 유류세)을 초과하지 못함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그 기관, 단체명과 부서명, 직급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630호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
- 전화번호 및 팩스번호 : 044-201-4018, 4019, 4020(팩스 044-201-5601)

4. 기타

○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